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421호)	정부 제출	2024.12.12.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 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620호)	정부 제출	2024.12.17.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 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734호)	박홍배	2025.9.5.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11.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6. 2. 4.)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6. 2. 6.)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규정이 없고, 연간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성실성·정확성을 담보할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허위·부실 작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휴업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는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3천원 미만의 소액 배출부과금에 대해서도 징수 면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성실 작성 의무를 부여하며,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제고함(안 제11조의6).
- 나.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안 제16조).
- 다. 실제 시설 운영자인 임차인이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의무 법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안 제11조제3항).
- 라. 동일한 시설로 연속하여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 후 현장 확인을 허용하도록 하여 가동개시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2조).
- 마.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근거를 신설하고, 작성 시 성실성·정확성을 확보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 4, 제33조)
- 바. 배출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보완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22조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22조”를 “제21조의2, 제22조”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자가측정의 준수 여부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제11조의6 전단 중 “휴업하려는”을 “30일 이상 휴업하려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동일한 시설로 연속하여 변경되거나 시설의 변경이 빈번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후에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존 사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존사업자가 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기한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3개월
2. 제1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6개월
3. 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폐쇄명령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중지가 명하여지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대상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기간 동안 제10조제1항 각 호

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호, 제40조제1호 및 제42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중전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을 통합허가대행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4호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제41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 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비산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4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5호, 제12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사업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은 각각 제22조제3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② (생 략) ③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1 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허 가의 취소는 제외한다), 제23 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21조 의2, 제22조----- ----- ----- -----.
④ (생 략)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 의 준수사항) ① 통합허가대행 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 의 준수사항) ① ----- ----- -----.
5.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 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 시설의 운영, 자가측정의 준 수 여부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③ (생략)

제11조의6(업무의 폐업·휴업)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① (생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6(업무의 폐업·휴업) --

----- 30일 이상 휴업하려는 -----

-----.

-----.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동일한 시설로 연속하여 변경

되거나 시설의 변경이 빈번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

③・④ (생략)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생략) <u><신설></u>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u><신설></u> 2. ~ 4. (생략) <u><신설></u>	<u>리한 후에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u>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u>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u>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률 제1360</u>
--	---

<신 설>

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에 따른 기존사업자가 같은 항
에 따른 기한 내에 제6조제1항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존사업자가 운영하
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기한 내에 제6조제1항에 따
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3개월

2. 제1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
지 6개월

3. 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를 받지 아니한 경우: 폐쇄명
령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중지가
명하여지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중지처분을 같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대상
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③・④ (생략) 제23조(과징금) ① (생략) <u><신설></u>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u>대해서는 사용중지 기간 동안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호,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3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②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③ 제1항 및 제2항----- ----- ----- ----- -----. ④ 제1항 및 제2항----- ----- -----
---	--

세입으로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3조(연간 보고서) ①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

⑤ -----제1항 및 제2항-----

-----.

제33조(연간 보고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을 통합허가대행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제38조(벌칙)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6. (생략)

2.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
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
한 자(제47조제6항제3호의 경
우는 제외한다)

제44조(벌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
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
과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3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신설>

제41조(벌칙) -----

-----.

1. ~ 1의6. (현행과 같음)

<삭제>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
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
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
하여 비산먼지, 휘발성유기화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
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
지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 ③ (생략)

④ 환경부장관은 기존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6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
니한 경우 그 기존사업자가 운
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
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용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
다.

1.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6
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3개월
2. 제1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

합물, 악취의 발생을 억제하
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
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47조제6항제3호
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
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
지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 ③ (현행과 같
음)

<삭 제>

지 6개월

3. 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를 받지 아니한 경우: 폐쇄명
령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
우로서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
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물
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
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중지처
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삭 제>

⑥ 제4항에 따라 사용중지가
명하여지거나 제5항에 따라 사
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이 부과된 경우 그 대상인 배
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해
서는 사용중지 기간 동안 제10
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호, 제
40조제1호 및 제42조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u>⑦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삭 제></u>
---	--------------------